

#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
- 다.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~제7조, 제11조~제14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,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

##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목적달성”을 “목적 달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학생4-H회원”을 “학생 4-H 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4-H 과제활동 및 4-H단체 지원

6. 그 밖의 4-H 육성사업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1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연금

제5조제1항 중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을 “회계관계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4-H활동”을 “4-H 활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사항”을 “다음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4-H단체육성”을 “4-H 단체 육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0인”을 “10명”으로, “위원수”를 “위원 수”로 하고, “다

만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는 예외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1인과 농업관련단체장,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”을 “1명과 농업 관련 단체장, 선도농업인 관계 공무원”으로, “육성발전”을 “육성 발전”으로 하고,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도육성 담당”을 “지도육성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주요사업”을 “주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직무를 수행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”으로, “대행한다”를 “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고, “한다”를 “하고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 중 “지급 할”을 “지급할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기금 운용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도육성담당”을 “지도육성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기금의운용 계획 및 결산)”을 “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보고 하여야”를 “보고하여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제규정”을 “모든 규정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<u>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<u>4-H과제활동 및 4-H단체지원</u></li> <li>3. <u>학생4-H회원 장학금 지원</u></li> <li>4.·5. (생 략)</li> <li>6. <u>기타 4-H육성사업</u></li> </ol> <p>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시 출연금</u></li> <li>2. (생 략)</li> <li>3. <u>기타</u> 수입금</li> <li>4. (생 략)</li> </ol> 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</p> |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<br/>----- 목적 달성-----<br/>-----</u></p> <p>② ----- <u>2030년 12월 31일-----</u>.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<br/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4-H 과제활동 및 4-H단체 지원</u></li> <li>3. <u>학생 4-H 회원</u> -----</li> <li>4.·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<u>그 밖의 4-H 육성사업</u></li> </ol> 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<br/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연금</u>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<u>그 밖의</u> --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</p> |

금은 농업기술센터의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하며, 시 금고에 예치한다.

②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 4-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.

③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(생략)
2.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3. 4-H단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지역 내의 시의

회계관계 공무원

② 4-H 활동

③ 다음 사항

1. (현행과 같음)
2. 그 밖의
3. 4-H단체 육성

제6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10명  
위원 수  
. 다만,  
는 예외로 한다.

③

원 1인과 농업관련단체장, 선도 농업인 관계공무원, 기타 4-H 회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·2. (생략)
3.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

-- 1명과 농업 관련 단체장, 선도농업인 관계 공무원-----

-- 육성 발전-----  
----- 위촉하되,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 -----  
-----  
----- 지도육성 업무 담당 팀장-----.

제7조(기능) -----  
-----  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주요 사업-----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-----  
---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-----

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

-----  
-- 한 차례만 연임-----  
-----

----- 하고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.

제12조(회계 관직 지정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의운용 계획 및 결산)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를 3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은 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--- 지급할 ----- . ---- 소속공무원-----  
--.

제12조(회계 관직 지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기금운용관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지도육성  
업무 담당 팀장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갖추어 두고 -----  
-----  
--.

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보고하여야 ---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 
-----  
----- 모든 규정-----  
-----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~ ② (생략)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(생략)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농촌지원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이 옥 희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   | 최 문 희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오 석 민<br>(480-4223) |